

계약조건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

심의번호	2017-38	심의방법	서면	발주부서	도로시설처					
안건명	탄천1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									
발주부서안 (원안)	1) 입찰방법 : 일반경쟁입찰(PQ) 2) 입찰참가자격 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, 입찰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'교량 및 터널분야'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(2개 업체까지 공동도급 가능-공동이행방식)									
의결내용	원안의결 (※ 위원회 의견 참고하여 과업내용서 등 수정)									
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.										
2017년 03월 15일										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계약조건심의위원회										
위원장 :	안찬		위원 :	장호진						
위원 :	김정준		위원 :	곽성환						
위원 :	서미영		간사 :	이동희						

계약조건심의 검토의견서

□ 건명 : 탄천1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

◉ 검토의견 : 원안의결 (○) / 수정의결 ()

◉ ‘과업내용서’ 및 ‘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’ 수정 필요

1. 과업수행서에는 ‘계약담당공무원’ 등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. 하지만, 공단 임직원은 공무원법령상의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.
- 과업내용서 p4, p20, p21 확인 후 수정 필요
2. 과업내용서 p23에서는 “해약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.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계약에서 ‘해약’이라는 용어 대신 “해제 또는 해지”를 사용하고 있는바,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.
3. ‘과업내용서’ 및 ‘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’에는 ‘하도급’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지 아니함. 구체적으로, 하도급을 인정할지의 여부 또는 하도급을 인정할 경우 그 실적을 어떻게 인정하여야 할지 여부 등을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.
- (참조) 서울시의 “2017년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” 용역 관련 과업내용서 및 세부 평가기준(안) 확인 필요.

2017. 03. 15

심의위원 장호전 *장호전(인)*